

용궁면 종합감사 결과

감사개요

 감사기간 : 2015. 3. 24. ~ 3. 27.(4일간)

 감사범위 : 2013. 3. ~ 2015. 3월 감사일 현재까지 업무전반

 감 사 반 : 법무감사담당 외 5명

 중점 감사내용

- 세출예산 집행의 적정여부
- 정부지원사업 관련 관리실태
- 각종 민원 및 업무처리 실태 적정여부 등

감사결과

○ 행정상 조치

- 47건(주의 6, 시정 10, 현지시정 31)
 - 본 처분 16건(주의 6, 시정 10)

○ 재정상 조치

- 7건 12,121,720원
(추징 3건 11,375,600원, 회수 4건 746,120원)

주요지적사항

1. 정보시스템 관리대장 미비치 및 PC진단프로그램 정기점검 소홀

- 국가 정보보안 기본 지침 제16조(사이버보안 진단의 날) 및 총무과-1912(2014.1.28.)호, 총무과-2860(2015.2.9.)호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 시행 및 정보시스템 관리 안내에 따르면 사이버테러 예방 및 공공 기관전산망 안전 등을 위해 매월 셋째주 수요일을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로 지정 운영하여 전 공무원이 PC안전성을 정기 점검하고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여 정보시스템(PC)이 바뀔 때 마다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2013년부터 2015년 3월 감사일 현재까지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지 않았고, 매월 셋째주 수요일에 시행하는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에 내 PC지키미를 22회에 걸쳐 미실행하여 사이버 보안 진단의 날 체크리스트를 미작성
- ▶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매월 셋째주 수요일에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에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이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 요구

2.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및 집계표 인수인계 지연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9조(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의 송부)에 의하면 지문 채취를 완료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와 집계표를 다음 달 5일까지 해당자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지구대장 또는 파출소장에게 보내야 한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2015. 1월 ~ 2월분 신규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를 다음 달 5일까지 송부하지 않고 1월 ~ 2월 지연 송부
- ▶ 신규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와 집계표를 다음 달 5일까지 파출소장에게 인계하고,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이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요구

3. 세외수입 수납금 지연 납부

- 「지방재정법」 제63조 제2항에 의하면 수입금출납원이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을 직접 수납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수납금을 해당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수납금의 납입)에 따라 수납금의 납입은 금고의 소재지에서 수납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 까지, 그 밖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2014년 11월부터 2015년 3월 감사일 현재까지 수입증지 수입건에 대하여 다음날까지 세입처리 하지 않고 최대 3일까지 지연 납입

- ▶ 세외수입 수납금은 징수일 다음날까지 세입처리를 완료하고,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이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요구

4. 이륜자동차 민원서류 처리 부적정

- 「자동차 관리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9조, 제101조에는 이륜자동차를 취득하여 사용하려는 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로 양도양수 증명서, 이륜자동차 제작증(신규로 제작·조립한 이륜차) 작성시 인지세법 제1조, 제3조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는 민원사항은 민원실 또는 민원처리 주무부서에서 접수하고 그 민원서류의 왼쪽 윗부분에 민원서류 표시인을 찍어야 한다고 되어있음에도, 2013. 3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이륜자동차 민원서류를 접수하면서 2014년 70건, 2015년 20건에 대하여 민원서류 표시인을 찍지 않았고 결재를 득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륜자동차 제작증 및 양도양수증명서 상에 수입인지 54건 (162,000원) 미소화
- ▶ 미소화한 수입인지 162,000원을 소화하고,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이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 요구

5. 이륜자동차 책임보험 가입의무위반자 과태료 미부과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따르면 자동차 보유자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책임보험 가입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용궁면에서는 2013년 ~ 2015년까지 이륜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자 77명 11,211,600원의 과태료 미부과
- ▶ 부과 누락된 과태료 대상자 77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업무연찬으로 이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 요구

6. 세출예산의 목적외 사용

- 지방재정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이 정한 각 장·관·항 사이에 상호 이용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도 세출예산의 목적외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2013~2014년 자매결연도시 행사교류비 목적으로 편성되어 있는

행사운영비 예산을 행사지원 인력과 무관한 초청인사 등을 대상으로 식비를 지출하였고, 특산품 구입 또한 본 과목에서 지급 할 수 없는데도 집행하는 등 세출예산의 목적 외 사용

▶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이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요구

7. 출납사무의 인계인수서 미작성

- 예천군재무회계규칙 제99조 및 예천군사무인계인수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르면 출납사무담당자가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1월 이상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5일 이내 후임자에게 인계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2015.01.12일자 지출원 등 변동시 인계인수서 미작성

▶ 관련법규 업무연찬으로 이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요구.

8. 환경미화원 연차유급휴가수당 지급 부적정

- 예천군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제31조에 의거 연차유급휴가 미 실시한 환경미화원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2014년 환경미화원 연차유급휴가수당 지급 시 〇〇〇에 대하여 연가일수 착오계상으로 105,120원 과다 지급

▶ 과다 지급한 연차유급휴가수당 105,120원에 대하여 회수하고, 철저한 업무 연찬으로 이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 요구

9. 관급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관리 소홀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및 예천군 폐기물관리 조례 제12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의거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를 부과·징수 할 수 있게 되어 있음에도, 관급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관리하면서 2014년부터 감사일 현재 까지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대장과 실제잔량이 일치하여야 함에도 부족분이 발생하는 등 관리 소홀

▶ 불일치된 잔량은 일치시키고 수불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업무연찬으로 이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 요구

10. 의사무능력자 현금지출내역 확인 소홀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제5편 수급자 관리규정에 의하여 의사무능력(미약)자의 급여관리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급여가 수급자에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지급되는 급여를 타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시행하는 제도로써, 급여관리자는 급여를 지출한 경우 그 내역을 기록(영수증관리)하고 읍·면·동장은 부적정 급여관리의 개연성이 높은 가구를 중심으로 정기적으로 현장 확인 후 급여관리 점검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점검내용에는 지출내역 및 증빙서류를 최대한 확보하되 고령 등 여건이 어려운 경우 담당공무원이 구술로 확인하여 기재함으로서 급여를 타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의사무능력자에 대한 급여 관리 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현금지출에 대한 지출내역 확인 소홀
- ▶ 지출내역 및 증빙서류를 최대한 확보하고,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이후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요구

11.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금 업무 소홀

- 벼 재배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서 쌀생산 감소, 쌀값 하락, 생산비 증가 등으로 실제 농가 소득감소에 따라 경상북도와 우리군에서는 도내 거주하고 우리군 관내 벼 재배농가에 대하여 특별지원금을 지급토록하고 있으나, 2013년, 2014년에 쌀 소득보전직불제 지급 필지 외에 특별지원금 지급대상자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변동직불금 지급농지에 대해서만 특별지원금을 지급하여 벼 재배농가 소득안정 업무 소홀
- ▶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이후 동일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요구

12.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업무 부적정

- 「농지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를 제출하고 농지법 시행령 제7조 각항 요건에 적합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농지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 납부하여야 하나,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시 농지법시행령 제7조 각항 요건 3항 농업경영계획서 작성 대상에 대하여 그 내용이 신청인의 농업경영능력 등을 참작할 때 실현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농업경영계획서 내용이 미기재(2013년 27건, 2014년 5건) 되었으나 확인하지 않고 발급하였으며, 2013년 2건에 대하여 수입증지(2,000원) 미소화
- ▶ 미소화한 수입증지 2,000원을 소화하고,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이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 요구

13. 중·소형 농기계 및 곡물건조기 지원사업 사후관리 업무 소홀

- 농촌인구의 노령화, 부녀자의 농기계 사용 증가에 따라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 부담 경감, 노동력절감,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중·소형 농기계, 곡물건조기를 지원 하고 있으며, 지원한 농기계에 대해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일정기간 (관리기 5년, 건조기 8년 등) 사후 관리토록 사업시행 지침에 규정되어 있으나, 중·소형 농기계 및 곡물건조기 지원 사후관리 업무를 추진하면서 2010~2013년 지원된 농기계에 대하여 관리대장 미기록(96건), 관리대장 사진 미첨부(18건) 하는 등 농기계 사후관리 업무 소홀
- ▶ 사후관리기간(관리기 5년, 건조기 8년 등)동안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고, 사진 미 첨부된 관리대장에는 사진을 첨부하여 관리하고,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이후 동일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 요구.

14. 공사비 과다 계상

- 건설공사를 설계 시행함에 있어 건설표준품셈, 공사원가계산 적용기준, 현장 여건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적정한 공사비를 산출하고, 시공과정에서 변경 요인이 발생하는 부분을 정리하여 조치하여야 하나,
 - 2014. 5. 2. ~ 2014. 5. 27까지 ■■■■(주) ○○○와 계약한 □□2리 농로포장공사에 대하여 현지 여건상 포장 거푸집 일부를 설치하지 않고 시공하여 준공 처리하기 이전 현장 상태를 기초로 하여 설계변경 또는 정산 하여야 함에도 별도의 조치 없이 준공 처리하여 공사비 합계 270,000원 과다 계상
 - 2015. 3. 10. ~ 2015. 4. 6까지 (주)◆◆ 최병진과 계약한 □□1리 농로 포장공사에 대하여 현지여건상 포장 거푸집(유로폼) 8㎡를 설치하지 않고 시공이 가능하나 설계시 시공이 필요치 않은 구간에 거푸집을 과다하게 설계에 반영하여 그 결과 공사비 합계 264,000원 과다 계상
 - 2014. 3. 14. ~ 2014. 5. 27까지 ●●●●(주) ○○○과 계약한 □□1리 배수로정비공사에 대하여 현지 여건상 되메우기 단가산출시 되메우기 후 성토계획이 있어 100%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나 인부10%를 과다적용 하였고, 콘크리트 포장시 양생 비닐 59㎡를 사용하지 않고 시공하여 준공처리 이전에 설계변경 또는 정산하여야 함에도 별도의 조치 없이 준공처리하여 공사비 합계 107,000원 과다 계상
- ▶ 과다 지급된 공사비를 회수하고, 준공검사 시 철저한 현장 확인으로 이후 동일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 요구